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9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가소175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 소유한 여주시 D 임야 9,91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0. 12. 14. D 임야 1,653㎡, E 임야 1,653㎡, F 임야 1,653㎡, G 임야 2,588㎡, H 임야 2,371㎡로 분할되었다(이하 이들 분할된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여 표기한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 I, J에게 분할 전 토지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자녀인 K 명의로 I과 함께 C으로부터 그 중 G, H 토지 부분을 매매대금 150,000,000원(= I 80,000,000원 + 원고 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D, E, F 토지 부분은 피고와 J이 함께 피고의 동생인 L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9.경 피고에게 자신의 매매대금 70,000,000원에 14,000,000원을 더한 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I은 2010. 12. 16. G, H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자녀 K 명의 지분 4,666/10,000, I 명의 지분 5,334/10,000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4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1. 9.경 피고에게 G, H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비용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현재까지 G, H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또는 2021. 12. 23.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위 위임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임계약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갑 제7, 9, 11, 28~30, 32, 33호증, 을 제4, 17, 20~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이 G, H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용임을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사실확인서, 참고서면(갑 제7, 29, 32호증)과 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가 존재한다. 그런데 I은 원고처럼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16,000,000원이 G, H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고, N은 I의 배우자여서, 이들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한편 O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에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 소문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O은 위 사실확인서에 피고가 원고, I,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본인 역시 피고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I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0. 11.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또한 J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 2021. 5. 18.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또한 P, M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8, 33-1호증)에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P은 녹취록(을 제20호증)과 사실확인서(을 제22호증)에서, M는 녹취록(을 제21호증)과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 각 이를 반복하고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돈 14,000,000원은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개간을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에서 ‘G, H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갑 제9호증). 이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처럼 분할 전 토지의 개간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